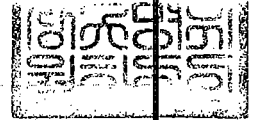


#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

성 명	한 글	엄 태 영	일본명	
	한 자	嚴 台 永	이 명	嚴 台 泳
출 생 연월일	1875년 7월 28일		사 망 연월일	1912년 9월 15일
본 적	漢城 中晷 貞善坊 泥洞 73統 5戶(1907년 주소)			
주 요 경 령	1904년 이전			
	1875.7.28	출생 (대한제국관원이력서, 373쪽)		
	1894.7.	農商衙門 주사 (같은 자료)		
	1895.4.1	農商工部 주사(판임관5등) (같은 자료)		
	1898.7.20	量地衙門 서기 (같은 자료)		
	1902.2.4	地契衙門 주사 (같은 자료)		
	1904년 ~ 1945년			
	1905.4.7	농상공부 참서관(주임관5등) (대한제국관원이력서, 652쪽)		
	1906.6.20	농상공부 서기관(주임관3등) (같은 자료, 373쪽)		
	1910.10.1~1912.9.15	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(조선총독부관보, 1910년 10월 7일, 1912년 9월 19일)		
1912.8.1	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(같은 자료, 1913년 5월 31일)			
1912.9.15	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중 사망 (같은 자료, 1912년 9월 19일)			



## 조 사 내 용

1. <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> 제2조 제9호(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·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)와 관련하여

### 1)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재직

▶ 「從五位李始榮外33名朝鮮總督府中樞院副贊議被仰付ノ件」, 『任免』 卷26, 1910;  
『조선총독부관보』, 1910년 10월 7일.

1910년 10월 1일 **엄태영**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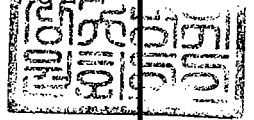
▶ 『조선총독부관보』, 1912년 9월 19일.

1912년 9월 15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**엄태영**이 사망함.

### 【참고사항】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

- 출전: 『조선총독부관보』, 1913년 5월 31일.

1912년 8월 1일 <明治45년 칙령 제56호>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.



판 단

엄태영은 1894년 7월부터 농상아문 주사를 시작으로 1906년 농상공부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대한제국 시기에 줄곧 농상공부 관료를 역임하였다.

그 후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1일부터 1912년 9월 15일 사망하기까지 약 2년 동안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다. 또한 1912년 사망하기 직전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. 엄태영이 중추원 부찬의를 역임한 행위는 <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> 제2조 제9호 “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·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”에 해당된다.

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엄태영의 행위를 <특별법>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.



2006년 9월 13일

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

